Ⅲ. 감사결과

1. 총 괄

○ 감사결과 총 17건의 처분(현지조치 포함) 및 5건의 업무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합계		신분상 조치(건/명)			기관경고	기관주의	시정	권고	개선	통보	현지조치	수범사례 업무유공
건	금액(원)	징계	경고	주의								
17	140,610				-	4	1	2	3	5	2	5

○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조치기관	지적사항	처분사항
1	보령해양경찰서	휴직자 복무점검 미흡	통보
2	보령해양경찰서	긴급출동지원센터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미흡	기관주의
3	보령해양경찰서	복무관리(임신검진휴가·병가) 미흡	통보·시정 (140,610원)
4	보령해양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관리 부적정	통보
5	보령해양경찰서	회계 업무처리 기준 미준수	통보
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경비함정 특성을 고려한 비상소집 운영체계 개선 필요	개선
7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경비함정 입항일 복무기준 마련 필요	개선
8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신규전입자 직무교육 이수 미흡	기관주의
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시계(視界) 제한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목측 기준 개선 필요	개선
10	보령해양경찰서	사건수사비 집행 개선 필요	권고
11	보령해양경찰서	함정 먹는 물 관리 미흡	기관주의
12	보령해양경찰서	수리(공사)감독관 지정 절차 미준수	권고
13	보령해양경찰서	시료 보관 및 관리 미흡	통보
14	보령해양경찰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재위촉 절차 미준수	기관주의

2. 주요 지적사항[1](14건) 요약

(1) 휴직자 복무점검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보고를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기간 중 복무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2024년도 하반기 휴직자 복무점검 당시 유학 및 연수 휴직자에 대해 [표 1]과 같이 복무상황신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만 제출받았고, 실제 유학 및 연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재학증명서 등)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표 1] 휴직 목적의 증빙자료 미제출 내역

점검연도	계급	성명	휴직종류	제출서류	비고
2024년 (하반기)	@@	◐◑◒	유학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학 증빙서류 미제출
2024년 (하반기)	○○	◰◱◲	연수휴직	- 복무상황신고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연수 증빙서류 미제출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육아휴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제도로 복무점검 시 육아휴직자가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휴직자와 대상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확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 하지만 보령해양경찰서는 휴직자 복무점검 시,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는

1) 본 요약은 감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일부 문안이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만 자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24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까지 점검 대상 육아휴직자 총 145명 중 128명(88%)에 대하여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무관리 실태 점검한 사실을 확인

[표 2] 연도별 복무점검 시 육아휴직자 및 대상 자녀 출입국 기록 제출 현황

점검연도	점검 대상 육아휴직자(명)	휴직자 본인 출입국 기록 제출(명)	대상 자녀 출입국 기록 제출(명)	비고
2024년 하반기	16	16	0	대상 자녀 16명 전부 미제출
2025년 1분기	23	23	0	대상 자녀 23명 전부 미제출
2025년 2분기	28	28	4	대상 자녀 24명 미제출
2025년 하반기	27	27	5	대상 자녀 22명 미제출
2026년 상반기	51	51	8	대상 자녀 43명 미제출
합 계	145	145	17	128명 미제출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향후 휴직자 복무 실태 점검 시, 휴직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복무점검이 되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긴급출동지원센터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미흡 (기관주의)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보화사업 수행 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4년도 정보보안 감사 결과에 따라 정보화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및 교육·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화사업 진행 절차 준수를 지시[2]한 바 있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2025년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정보보안 감사[3] 당시 긴급출동지원센터 네트워크 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절차 누락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보화 사업 공고 전 보안성 검토(부두 함정 승조원 시설) 추후 보고 예정'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음

- 하지만 [표 1]과 같이, 이후 추진한 긴급출동지원센터 내 CCTV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보안성 검토 절차를 다시금 이행하지 않은 등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표 1] 보령해양경찰서 긴급출동지원센터 CCTV 구축 사업 내역

계약일자	구매내역	계약금액	준공일자	보안대책	보안성 검토
2025.12.18.	고정형돔카메라 등 22종	35,297,080원	2026. 2. 24.	미수립	누락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주의)**

2) 중부청 기획운영과-11037('24.9.23., "정보화사업 절차(보안성 검토 요청) 준수 철저 지시")호
3) 중부청 기획운영과-10440('25.8.28., "'25년도 중부청 주관 소속기관 정보보안감사 결과 알림")호

(3) 복무관리(임신검진휴가 · 병가) 미흡 (통보·시정)

□ 판단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휴가 사용 시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이 임신검진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

○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일반 병가 사용 시 병가의 누계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4]를 첨부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에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표 1]과 같이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결과, 임신검진휴가 당일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함을 확인함

[표 1] 임신검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연번	현부서	대상자	종별	사용일자	사유	증빙자료	실제검진여부
1	◍◎◇○●	△△ ◈◉◇	임신검진휴가	'24.10.21.(1일)	병원 정기검진	미첨부	x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연간 병가 누계 일수가 6일을 초과(11일) 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병가를 사용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소명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병가 사용 당일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진단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함

4)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

[표 2] 연간 누계 병가 6일 초과 사용에 대한 진단서 미제출자

연번	현부서	대상자	종별	사용일자	병가사유	병가 누계 일수	진단서 제출	실제 병원 진료
1	□□□정	◇◇ □□□	일반병가	'26.08.04.(1일)	병원진료	11일	x	x
2	□□□정	◇□ □□□	일반병가	'25.11.07.(1일)	병원진료	11일	x	x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복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휴가제도 규정, 사례 등 관련 교육 및 점검 등 자체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부적정한 임신검진휴가 및 병가(2025년)를 사용한 2명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140,610원[5] 환수 및 2026년 병가 사용자 1명에 대하여 근무상황 변경 등 시정하기 바랍니다.**(시정)**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관리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관리 기준[6]」에 따라 개설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는 해당 목적대로 운영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아야 하며, 계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운용부서는 자체 출납 계좌를 월 1회 이상, 경리계(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는 관서명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총괄을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계좌 현황, 거래 내역, 잔액 등을 점검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 □□□□□는 '25년 10월 '기타(포상금, 격려금)' 목적으로 개설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를 통해 [그림 1]과

5) 연가보상비: '□□' 기준 2024년 64,960원, 2025년 75,650원
6) 해경청 운영지원과-8893('25.5.12., "해양경찰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기준 하달")호

같이 ‘26년 6월 개인별 맞춤형 복지비 환수금(4,940,990원)을 입금받아 해양경찰청 계좌로 출금하였고, ‘26년 8월에는 개인에게 오지급한 맞춤형 복지비(28,530,000원)를 환수받아 온누리상품권을 일괄 구매하는데 사용함

[그림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맞춤형 복지비 입출금 내역

<table>
<tr><td>관련 공문(문서)</td><td>통장거래내역(사진)</td><td>통장거래내역(사진)</td></tr>
<tr><td>’26년 6월 맞춤형 복지비 환수 공문</td><td colspan="2">’26년 6월 맞춤형 복지비 개인별 환수 내역</td></tr>
<tr><td>통장거래내역(사진)</td><td>관련 공문(문서)</td><td>통장거래내역(사진)</td></tr>
<tr><td>맞춤형 복지비(4,940,990원) 출금 내역</td><td>’26년 8월 맞춤형 복지비 환수 공문</td><td>맞춤형 복지비(28,530,000원) 환수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 내역</td></tr>
</table>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특수건강검진비(210-01)로 배정된 예산 45,300,000원을 [그림 2]와 같이 ’26년 6월 15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로 교부요청하고 ’26년 7월 20일 입금받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그림 2] 특수건강검진비 교부 요청 공문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입금 내역

관련 공문(문서)	통장 거래내역(사진)
특수건강검진비 교부 의뢰 공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로 교부받은 내역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분기 1회 이상 관서명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에 대해 월간 점검 실시 여부, 출금대장 및 통장 거래내역 대조 점검 등을 통해 부당 출금, 사적유용 및 목적 외 계좌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26년 2분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 점검 당시 [그림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좌 개설 목적 외로 사용한 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목적 외 사용여부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계좌 관리·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가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 대상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5) 회계 업무처리 기준 미준수 (통보)

□ 판단기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정규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또한,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7]」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상품권 구매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상품권의 안전하고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기준[8]을 마련하였음

○ 한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고, 사무인계 인수서와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하여야 할 회계서류는 아래의 [표 1]과 같음

[표 1]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할 회계서류

가) 사무인계인수서 3부 작성
ㅇ 포함내용 : 출납공무원 사무 인수인계서, 출납공무원 직인, 국고예금은행잔액증명서, 국고예금통장 사본, 정부구매카드 현황, 중요미결 및 진행사항
* 전임, 후임자 각각 1부, 1부는 소관 지출관(경리계) 제출바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계인수양식은 정보마당(회계자료실) 참고 바랍니다.
나)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다) 현금 보관 시: 현금현재액 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
라) 국고예금통장: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인계인수서에 기명 날인
마) 정부구매카드: 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인계인수서에 기명 날인
* 국고예금잔액증명서는 거래 금융기관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금액을 청구하여 발급받아야 함

자료: 해양경찰청 관서운영경비 업무처리 기준

7)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3-322호, 2013. 9. 27.)
8)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20269('25.11.7., "해양경찰청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 알림")호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 ◎◎ 및 □□파출소에서 [표 2]과 같이 정규근무시간 중 특근매식비를 총 5회 72,000원 집행한 사실을 확인함

[표 2] 정규근무시간 중 특근매식비 사용 내역

부서명	사용 일자	사용 시간	거래처명	결재 금액(원)
◎◎파출소	’24. 11. 05.	17:29	◈◇◈◇	6,000
◎◎파출소	’26. 08. 14.	17:59	◈◇◈◇	6,000
□□파출소	’25. 01. 01.	17:55	◕◔◓	12,000
□□파출소	’25. 02. 16.	17:57	▦▥▦▨▤	6,000
□□파출소	’25. 06. 30.	17:56	▣▢▣▢	42,000
합 계				72,000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해양경찰청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1회에 3,000,000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복수의 비교 견적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나, [표 3]와 같이 2026년도 1분기 생일 대상자(128명)에게 지급할 상품권(총 384매, 3,801,600원)을 구매하면서 타 상품권과의 비교 검토 없이 신세계 상품권을 일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

[표 3] 3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 내역

연번	구매일자	상품권 종류	수량(매)	구매액(원) (할인율/금액)	구매용도(목적)	비교견적
1	’26. 04. 15.	신세계 상품권	384	3,801,600 (1% / 38,400)	’26년도 1분기 생일자(126명) 지급	x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시 [표 4]과 같이 인계인수 기준일자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자와 불일치하였고, 잔액증명서 상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 사무 인계·인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표 4] 보령해양경찰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인계인수서 미흡 내역

관 서 명	확 인 내 용
□□□□◴◶◶	잔액증명서(56,728,006원)와 통장잔고(25,112,840원) 불일치
■■◤◢◫	인계금액(9,165,850원)과 잔액증명서(9,205,450원) 금액 불일치
◬◭◭	기준일자('26.2.20)와 인수인계('26.2.25) 일자 상이
▰▱▰▱	인계금액(2,196,080원)과 잔액증명서(2,166,080원) 금액 불일치
◴◶◶◷	기준일자('26.2.20)와 잔액증명서 발급 일자('26.3.23) 불일치
◇◆◈○	기준일자('26.2.20) 미준수(담당자 임의로 '26.2.11로 작성)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직원 대상 회계 업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6) 경비함정 특성을 고려한 비상소집 운영체계 개선 필요 (개선)

□ 판단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6조에 따라 긴급사태 발생 대비 소속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함

○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비세력의 운용인력, 파출소, 구조대 인력 등 현장 집행이 필요한 인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소집 명령 시 1시간 이내 응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전체 승조원(113명) 중 전용부두로부터 원거리[9)]

(1시간 이상 거리) 출·퇴근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4명(39%)으로 비상소집 시 현실적으로 1시간 이내 응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표 1] 2026년 보령해경서 경비함정 근무자 원거리 거주 및 1시간 이내 응소 가능 비율

(단위 : 명)

구분		총계	511함	320함	209정	P-31정	P-68정	P-89정	P-90정	P-121정	방제10호정
총원		113	21	20	14	9	9	9	9	12	10
원거리 출·퇴근자	합계	44	8 (38%)	10 (50%)	9 (64%)	3 (33%)	6 (66%)	4 (44%)	2 (22%)	2 (16%)	0 (0%)
	항해	30	7 (조리1)	6	5	3	4	2	1	2	0
	기관	14	1	4	4	0	2	2	1	0	0
1시간 이내 응소 가능자	합계	69	13	10	5	6	3	5	7	10	10
	항해	43	7	7	3	3	2	4	5	6	6
	기관	26	6	3	2	3	1	1	2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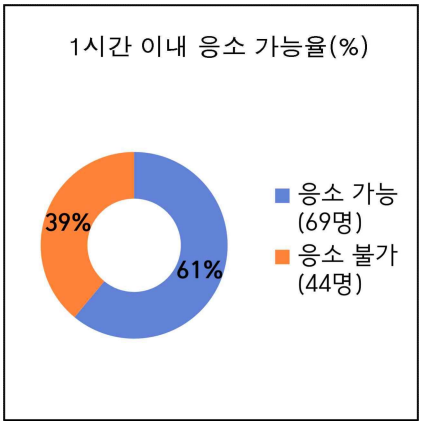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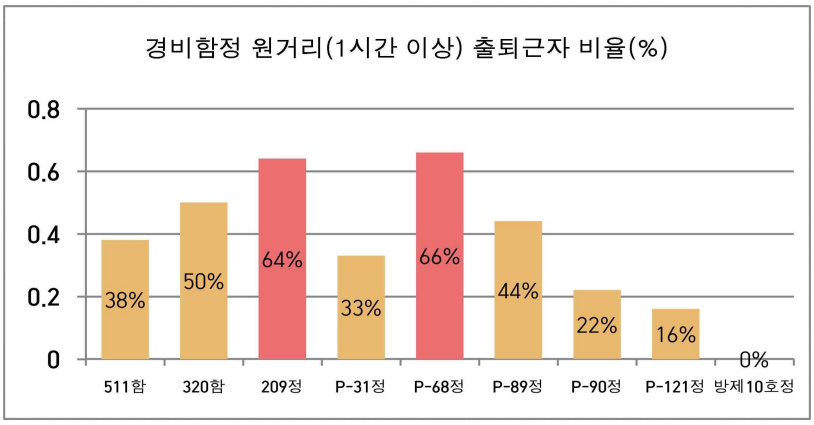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경비함정 전용부두는 항만 지역 특성상 인근 주거시설이 없거나 이격되어 있고 특히, 보령해양경찰서는 결원 지역으로 매년 인천·평택 지역 장기 근무자가 전입하고 있지만 관사 보급률이 현원 대비 11%에 불과해 많은 근무자가 원 주거지(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보령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원거리 출·퇴근자의 비상소집 미응소 발생 우려에 따른 자체 대책[10]을 수립하였고, [표 2]와 같이 운영 중에 있지만, 경비함정 운용의 특성, 전용부두의 입지 조건, 직원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며, 현행 비상소집 운영체계의 근본

9) 인천광역시, 평택시, 청주시, 천안시, 시흥시, 안산시, 대전광역시, 당진시, 전주시(일부지역) 등
10) 보령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5531('26.9.23., "경비함정 비상소집 등 즉응태세 운영대책 알림")호

적인 개선없이는 경비함정 승조원 총원의 1시간 이내 응소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2025년 보령해경서 경비함정 비상소집 등 즉응태세 개선 방안

분야	추진사항	세부내용
즉응태세 유지	❶ 출동 가능 근태 유지 (현원대비 70% 이상 인원확보)	▪ 정박기간 경비함정 별 휴가, 관외여행 등 인원관리 철저 ▪ 항해, 기관, 안전 등 직별 별 휴가자 조정으로 각 기능 필수인원 유지
	❷ 긴급출항 사유 발생시 비상출동 기준 정립	▪ 상황발생시 : 당직함정 출항 ▪ 경비함정 불가동시(* 2안) – 출동 중 : 당직함정 출동→경비구역 상이한 당직함정시 당겨 출동 – 정박 중 : 차기 출동 함정 당겨 출동 ▪ 함정장 개인사정 등으로 부재시(* 1안) : 차기 출동 함정 당겨 출동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경찰청 및 소방청의 경우에는 각각 「경찰 비상업무 규칙」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필수요원을 '1시간 이내에 응소가 가능한 자' 로 우선 지정하고 있음

- 경비함정은 실제 출항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인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일근부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필수요원을 지정할 경우 신속한 비상 출동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경비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출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전용부두의 입지적 특성과 함정승조원의 정주 여건 등 현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비상소집체계가 마련되도록 개선 검토 필요

□ 조치사항

❍ 경비과장은 경비함정의 특성 및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소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에 개선 건의바랍니다.**(개선)**

(7) 경비함정 입항일 복무기준 마련 필요 (개선)

□ 판단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장은 현업공무원에게 주간근무·야간근무·24시간근무 형태 중 근무시간을 지정해야 하고, 관서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함

○ 또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정박기간 중 휴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 「2024년 예산집행심의회 결과[11]」 초과근무 관련하여, 경비함정은 입항 즉시 특별한 과업이 없을 경우 전원 퇴근하고, 특별한 과업이 있을 시 지휘관(서장 등)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문제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중 소형정은 해양경찰청 「소형정 경비체계 관련 업무지시[12]」에 따라 근무시간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복수승조원 함정은 입항 시 인계·인수팀이 합동근무 하도록 근무시간을 지정한 반면, 중·대형함 및 특수정의 경우 [표 1]과 같이 소속기관별 근무방법이 상이함을 확인함

[표 1] 각 소속기관 경비함정 입항일 근무형태

관서명 / 함정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비고
대형함	입항 즉시 퇴근	-	입항 즉시 퇴근	입항 즉시 퇴근	-	
중형함	입항 즉시 퇴근	주간근무	입항 즉시 퇴근	입항 즉시 퇴근	주간근무	복수승조원 함정 제외
특수정	-	주간근무	입항 즉시 퇴근	주간근무	주간근무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11)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288('24.1.17., "예산집행심의회 결과 세부추진계획(알림)")호
12)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1796('24.3.15., "소형정 경비체계 관련 업무지시(알림)")호

○ 서해5도특별경비단 및 평택해양경찰서를 제외한 소속기관에서는 지휘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별도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지정하지 않은 채 경비함정 입항일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칙」에 따라 각 소속기관의 경비함정 규모 및 관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항일 현업공무원의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복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치사항

○ 경비과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복무 관리를 위해, 소속 경비함정의 입항일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경비작전과)에 개선 건의바랍니다.**(개선)**

(8) 종합상황실 신규전입자 직무교육 이수 미흡 (기관주의)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 신규 전입자는 상황처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황 관련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표 1]과 같이 2025년 신규 전입자 5명 중 2명, 2026년 신규 전입자 8명 중 7명이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해양상황 발생 시 해양주권 수호,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정확한 지휘·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황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전입자는 필히 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1] '25~'26년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신규 전입자 직무교육 이수 현황

연번	계급	성명	전입일	직무교육 이수여부	비고
1	◎◇	◇◆◆	'25. 02. 20.	미이수	-
2	◆◆	○▨◎	'25. 02. 20.	이 수	상황대응 역량강화교육
3	□■	▥■▨	'25. 02. 20.	이 수	상황요원 전문화 교육(심화)
4	◉◈	■◉■	'25. 02. 20.	미이수	-
5	▥▨	◫□	'25. 02. 20.	이 수	현장부서 신고접수 및 상황관리 기초과정
6	▦▩	◶◆△	'26. 02. 23.	미이수	-
7	○◎	◔△◕	'26. 07. 14.	미이수	-
8	◐◑	◆◆	'26. 02. 23.	미이수	-
9	△△	□■□	'26. 02. 23.	미이수	-
10	◔◕	◎◷◇	'26. 02. 23.	이 수	긴급신고접수요원 실무교육
11	■△	▦■▩	'26. 02. 23.	미이수	-
12	◫□	△◆△	'26. 02. 23.	미이수	-
13	◷□	◷◕□	'26. 02. 23.	미이수	-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전입자에 대한 해양상황 관련 직무교육이 필히 이수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주의)**

(9) 시계(視界) 제한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목측 기준 개선 필요 (개선)

□ 판단기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및 수상레저기구 활동의 제한을 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行政作用)이며,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어선 출항 제한 및 수상레저기구 활동 제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영업과 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視界) 제한의 판단기준(측정방법, 가시거리 기준 물표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될 경우 낚시어선 출항 및 수상레저기구 활동 제한을 위해 [표 1]과 같이 목측 물표를 선정하여 가시거리를 판단하고 있으나, 파출소별 물표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물표까지의 거리를 실제 거리와 오차 확인 및 검증 없이 설정한 것을 확인함

[표 1] 보령해양경찰서 목측 물표 선정 근거 및 방법

파출소	목측 물표 선정 근거	가시거리 설정방법
홍성파출소	V-pass상 위치가 표기되고, 육안으로 윤곽이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고정 물표이며,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측정에 용이하고 도보 및 순찰차량 이용하여 이동 가능한 위치로 설정	네이버 위성지도 및 V-pass 활용 거리 측정
오천파출소	파출소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여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을 물표로 설정	네이버 지도 및 V-pass 활용 거리 측정
대천파출소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가장 측정하기 편리하며 외적 특징이 뚜렷한 물표 설정	V-pass 활용 거리 측정
홍원파출소	육안으로 윤곽이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고정 물표로 출장소 및 파출소에서 이동하여 관측이 용이한 물표로 선정	네이버 지도 및 V-pass 활용 거리 측정
장항파출소	파출소에서 제일 가까운 물표 설정	V-pass 활용 거리 측정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일부 파출소의 경우 [표 2]와 같이 육상 목측 기준점(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동일한 기상 조건에서도 근무자의 관측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 특히, 목측 기준 물표, 기준 거리 등 구체적 시계 제한의 판단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출항 제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통제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민원 및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표 2] 보령해양경찰서 파출소 출항지별 목측 물표 현황

파출소명	출항지	육상 목측 기준점	목측 물표	거리
홍성파출소	남당항	홍성파출소	남당항 입구 슬립웨이	0.5km
		남당항 방파제	꽃섬	1.1km
	궁리항	궁리출장소	궁리 선착장	0.5km
		궁리항 방파제	해성활어 유통센터	1.2km
	장은항	장은항 남쪽 방파제 끝단	양식장 경고 표지판	0.5km
	수룡항	수룡항 출장소	장은항 방파제	1km
오천파출소	오천항	오천파출소	오천파출소 맞은편 북항	0.5km
		오천파출소	예인선 정박지	1km
	학성항	학성항 우측끝단	밤섬	0.96km
	회덕항	회덕항	가승구지항	1.2km
대천파출소	대천항	대천파출소	대천항 서방파제 끝단(빨간등대)	0.5km
		대천항 여객선 부두	대천항 북방파제 서쪽 끝단(흰색 등대)	0.9km
		대천항 서방파제 낚시어선 계류장소	대천항 북방파제 동쪽 단(빨간등대)	1.05km
	무창포항	무창포출장소	무창포항 북방파제 빨간 인명구조함 표지판	0.5km
		무창포항 방제입구(유류수급소)	석대도	1.2km
	선촌항	선촌출장소	선촌항 방파제 빨간 등대	0.3km
		선촌항 낚시어선 계류장소	효자도 송전탑	1km
홍원파출소	홍원항	홍원파출소	홍원항 동방파제	0.6km
		홍원파출소	광암등대	1km
	마량진항	마량진항 남방파제 시작지점	서천화력발전소 돌핀부두 끝단	1km
	다사항	다사 출장소	장구리 수문 끝단	1.1km
장항파출소	신어선물양장	신어선물양장 남쪽방파제	군산항로 19번 등표	0.5km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시계 제한 시 출항 제한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파출소 관할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 출항지로부터 500m 및 1km 거리에 위치한 고정 물표(건축물, 방파제 특정 지점 등)를 명확히 재선정하고 공인된 측정 방식을 통해 실측 거리를 산출하고, 표준화한 시계 제한 판단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출항 통제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조치사항

○ 구조안전과장은 통제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시계 제한 시 출항 제한 판단을 위한 목측 물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선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과)에 개선 건의바랍니다.**(개선)**

(10) 사건수사비 집행 개선 필요 (권고)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수사예산 집행지침[13]」 중 사건수사비 세부 집행지침 및 [별첨 1] 사건수사비 집행절차 및 유의사항에서 사건수사비가 수사관의 식비 보전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명시하고, 관리자가 수사관의 직접 수사 활동과 무관한 식비에 예산이 충당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여 사건수사비가 식비에 편중되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에서 '25. 1. 1. ~ '26. 8. 31. 기간 중 집행한 사건수사비는 총 849건, 32,145,453원이었고,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 [표 1]와 같이 식비 760건(27,969,500원), 차량 유류비 87건(3,435,953원), 기타 수사활동 2건(740,000원)이며, 특히, 전체 사건수사비의 집행액 약 87%를 식비로 편중하여 집행한 사실을 확인함

[표 1] 사건수사비 집행 내역

구분	합 계	식비	유류비	기타 수사 활동
집행횟수	849건	760건	87건	2건
집행금액	32,145,453원	27,969,500원	3,435,953원	740,000원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13) 해경청 수시기획과-120('26.1.9., "2026년 수사예산 집행지침")호

○ 사건수사비 집행 기준에 따라 수사 외근 활동 중 개인 또는 팀원 간의 식비, 사건 관련자와의 동식 등 수사업무 활동 시 식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수사예산 집행지침」에서 사건수사비가 식비 보전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관리자를 통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수사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수사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사건수사비를 특정 항목에 편중하지 않고 본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으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사활동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권고)**

(11) 함정 먹는 물 관리 미흡 (기관주의)

□ 판단기준

○ 「함정 먹는 물 관리 규칙」에 따라 함정 먹는 물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저장탱크에 소독약(클로르칼키 등) 투여 및 매월 1회 이상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량은 하절기 0.4~4.0mg/ℓ, 동절기 0.2~4.0mg/ℓ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표 1]과 같이 ○◍◎함 등 7척의 경비함정에서 매월 1회 이상 먹는 물 저장탱크의 유리잔류염소량을 측정하여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표 1] 함정 먹는 물 저장탱크 측정(매월 1회) 누락 횟수

(단위: 회)

함정명 / 연도	○◍◎◧	▨◳◧	◴◔◵■	◇◈◇■	◐◑◒■	◈◍◎■	▧▨▥■	◲◑◳■	◇▨◎■
'24년 10월~	1	-	-	-	-	-	-	-	1
'25년	1	1	1	1	-	1	-	1	2
'26년	1	-	1	1	-	1	-	1	-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표 2]와 같이 ◇◈◇정 등 경비정 4척의 경우 함정 먹는 물 저장탱크 유리잔류염소량이 허용 기준을 미달하였음에도 소독약 투여 후 재측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함정 먹는 물을 소홀히 관리하였음

[표 2] 유리잔류염소 측정 결과 허용 기준 미달 횟수

(단위: 회)

함정명 / 년도	○◍◎◧	▨◳◧	◴◔◵■	◇◈◇■	◐◑◒■	◈◍◎■	▧▨▥■	◲◑◳■	◇▨◎■
'24년 10월~	-	-	-	-	-	3	-	-	-
'25년	-	-	-	8	-	11	8	-	-
'26년	-	-	-	6	-	6	7	1	-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경비함정의 먹는 물 관리가 승조원의 건강 및 보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질과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2) 수리(공사)감독관 지정 절차 미준수 (권고)

□ 판단기준

○ 「국가계약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감독공무원은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고,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해야 함

○ 「해양경찰청 정비편람」에서 수리 함·정장은 수리(공사)감독관을 사전 지정하고, 수리(공사)감독 및 감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표 1]과 같이 '24년 10월 ~ '26년 9월 15일까지 진행된 외주수리 총 162건 중 53건(32.7%)만 수리감독관을 사전 지정하였고, 나머지 109건(67.3%)은 감독관 사전 지정 절차 없이 수리 종료 후 감독일지 등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

[표 1] 보령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외주수리 감독관 지정 현황

구 분	합 계	2024년 10~12월	2026년	2025년
외주수리(건)	162	23	73	66
수리감독관 지정(건)	53	9	29	15
이행율(%)	32.7	39.1	39.%	22.7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현장부서에서 공사·수리 등을 시행할 경우 감독관 사전 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 및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감독관 지정 시기·방법 및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권고)**

(13) 시료 보관 및 관리 미흡 (통보)

□ 판단기준

○ 「해양오염조사 규칙」 및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해양오염 원인조사 등을 위해 시료를 채취할 경우 보관용과 분석용으로 각각 2점 이상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의 봉투에 채취일시, 장소, 채취자, 입회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 봉인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함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시료 봉투에 채취일시, 장소, 채취자 및 입회자 기록과 서명을 누락하였고, 일부 시료 봉투는 봉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시료 보관 및 관리 상태가 미흡함

[그림 1] 보령해양경찰서 채취 시료 보관 상태



시료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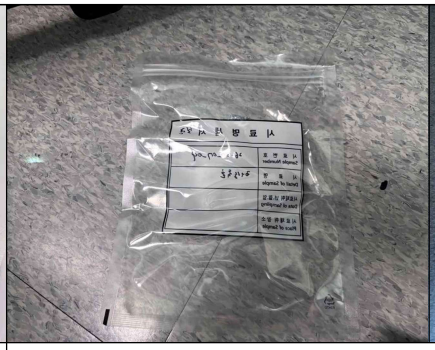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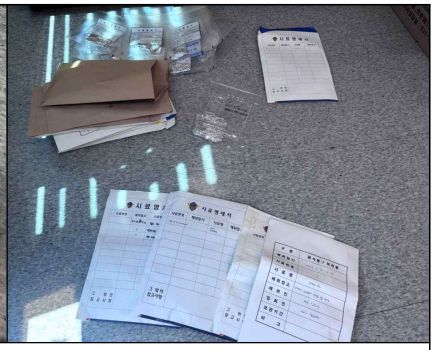

채취 일시, 장소 등 기록 누락 및 미봉인 상태의 시료 봉투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시료보관고에 보관 중인 시료는 보존기간, 폐기 일자, 폐기자 서명 및 결재를 받아 시료보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나,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양식의 시료보관대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시료 폐기 일자, 폐기자 서명, 결재 등을 일부 누락한 채 부실하게 기록 관리함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현장에서 시료 채취 요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료의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실효성 있는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14)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재위촉 절차 미준수 (기관주의)

□ 판단기준

○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에 따라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이며,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재위촉 할 수 있음

□ 문제점

○ 보령해양경찰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위촉되어 2024년 기간이 만료된 7명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서나 추천서 접수 없이 재위촉하였고, 이 중 2명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을 확인함

[표 1] 보령해양경찰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재위촉 신청서 및 추천서 미제출자

소 속	성 명	①위촉기간	②재위촉기간	비 고
보령해양경찰서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9월 현재	'26년 한국해양구조협회로 소속 변경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3. 23.	'26년 해촉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9월 현재	'26년 한국해양구조협회로 소속 변경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3. 23.	'26년 해촉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3. 23.	'26년 해촉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3. 23.	'26년 해촉
	◱◴▧	'21. 5. 12.~ '24. 5. 11.(3년)	'24. 7. 1.~ '26. 3. 23.	'26년 해촉

자료: 보령해양경찰서 제출자료 재구성

-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재위촉 시에도 신청서 및 추천서에 기재된 자격 요건과 신청사유를 면밀히 심사하여, 임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조치사항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재위촉 시에도 신청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관주의)**